

계단높이 재조정 및 대리석 재설치 작업 중 떨어짐

공 사 명	계양구 ○○동 ○○종합건설(주) ○○○○ 신축공사	발생일시	2019.06.18.(화) 10:20경
재해형태	떨어짐	재해정도	사망 1명
소 재 지	인천시 ○○구	공사규모	지하2층, 지상14층(3개동)
재해개요	○ 2019. 06. 18.(화) 10:20경 ○ 인천 ○○구에 소재한 ○○종합건설(주)가 시공중인 「○○○○ 신축공사」 현장에서 ○ 협력업체 ○○스톤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 박○○(만71세, 남, 석공)가 ○ 2동 지하1층 계단 재조정 및 대리석 재설치 보조 작업중 ○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2층 계단(높이 2,590mm)으로 떨어져 치료 중 2019. 06. 25.(화) 19시10분경 사망한 재해임.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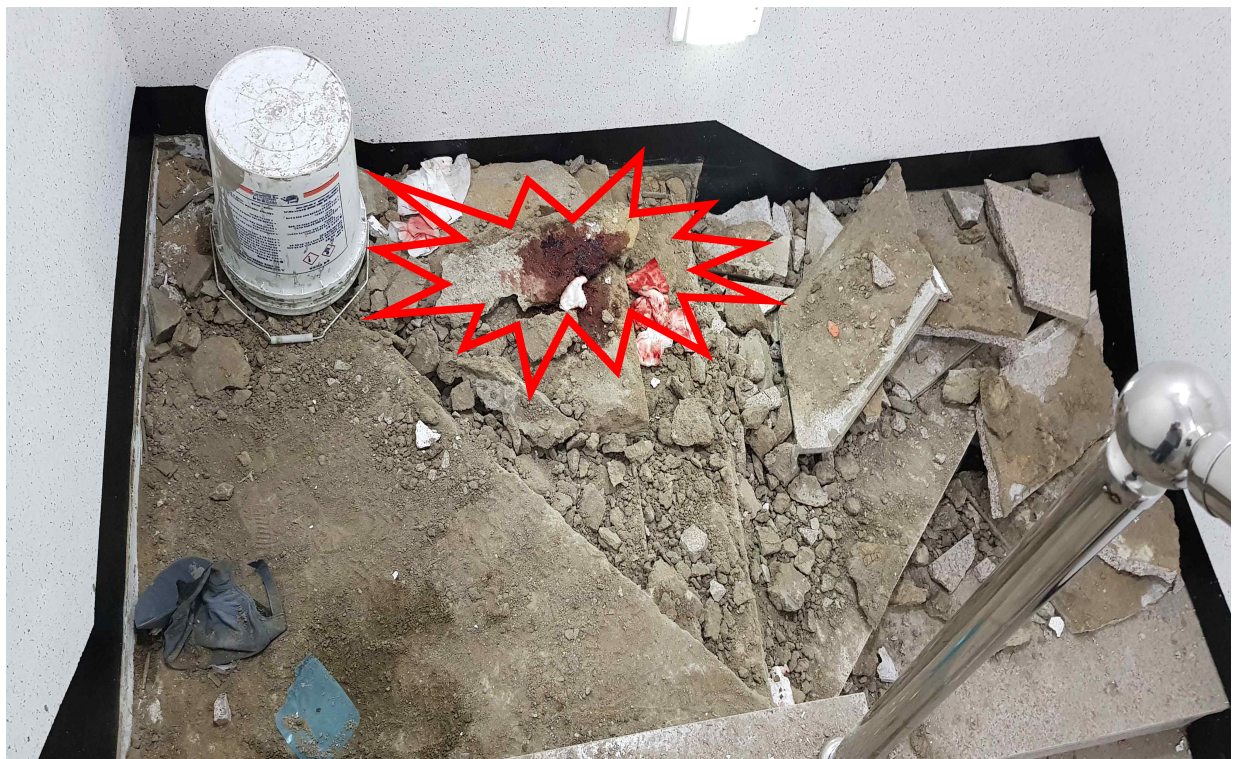
재 해 상 황 도



안전대책	○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준수 -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의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,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 ○ 계단의 난간 설치 준수 - 사업주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. ○ 보호구 지급 준수 -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. (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: 안전모)		
------	--	--	--



재해조사 당시 재해자 추락 위치



재해조사 당시 재해자 발견 위치